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4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2025.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4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이물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 규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69호, 2024.7.3. 시행)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되는 식품유형,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신설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3항)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을 반영한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조정(안 [별표1])

1) ‘금속성이물’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춧가루, 전분가공품 등의 검사항목에서 ‘이물’ 삭제([별표1] 제13-4호, 제16-1호, 제16-7호, 제20-6호)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 검사항목에 ‘카드뮴’ 추가([별표1] 제3호)

3) 영아전기용 조제식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등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별표1] 제10-2호, 제11-1호, 제11-3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5.11.25.)

(2) 행정예고(공고 제2025-492호, ’25.1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94호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호, 202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를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시행령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식품(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한다.)"을 "식품"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주문자상

표부착수입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육함유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을 “냉동제품 중 식육함유가공품(비살균제품), 어육가공품류(비살균제품) 또는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비살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를 “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1조 및”을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에서 정한 검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식품유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구분”을 “대분류”로 하고,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
		코코아버터	-
		코코아분말	납, 카드뮴
		기타 코코아가공품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3-2. 초콜릿류	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카드뮴
		밀크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카드뮴
		화이트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카드뮴
		준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카드뮴
		초콜릿가공품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카드뮴

같은 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특수영양식품	10-2. 조제식류	영아전기용 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영아후기용 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유아기용 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10-3.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이유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세균수(분말제품은 제외한다), 크로노박터(영야용 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10-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10-5. 임산·수유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대장균군,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10-6.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같은 표 제11호의 11-1, 1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특수의료용 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수분 및 전해질 보충용 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같은 표 제13호의 13-4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조미식품	13-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실고추	타르색소

같은 표 제16호의 16-1, 16-7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산가공식품류	16-1. 전분류	전분	회분
		전분가공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16-7.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곡류가공품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두류가공품	산가(대두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다만, 탈지 대두분은 제외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서류가공품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기타 농산가공품	산가(참깨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다만, 탈지 참깨분은 제외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같은 표 제20호의 20-4, 20-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수산가공식품류	20-4.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타르색소
	20-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같은 표 제24호의 2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기타식품류	24-2.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별표 4 제1호 검사항목란 및 같은 표 제2호 검사항목란 중 “세균”을 각각 “세균발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0호의 20-4.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1 제3호의 3-1. 코코아가공품류 및 3-2. 초콜릿류 검사항목란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3. 별표 1 제10호의 10-2. 조제식류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 ---------- ---------- ---------- ---------- ---------- ----------. ----------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포장을 포함한다.)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	제2조(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 식품- ---------- ---------- ---------- ---------- ---------- ----------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수입식품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3조(검사항목) 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한다.)의 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정 제조·가공 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4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다만, 식육함유가공	② ----------냉동제품 중 식

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육함유가공품(비살균제품), 어육가공품류(비살균제품) 또는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비살균제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	④ ---------- 중「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검체 채취방법 등) ① 검체의 채취는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검체 채취방법 등) ①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준의 적용) (생 략)	제5조(기준의 적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식품유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